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2. 10. 12.
발 의 자 : 정연우 의원
의 6 인

1. 개정이유
1992. 9. 17.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727호) 제15조에 의거 의원의 국내여비지급기준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제8조를 삭제
 -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7조제1항 관련)를 개정
 - 의회출석시 식비지급
 - 의장, 부의장 : 11,000원
 - 의원 : 10,500원
 - 현지교통비 인상 : 500원 인상

- 여행지별 구분변경(특지, 갑지, 을지 → 갑지, 을지)
 - [별표 3] 의회소재지내 출장시 여비지급기준표(제8조제1항 관련)를 삭제
3. 개정안 : 별 첨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7조제1항 관련)를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3] 의회소재지내 출장시 여비지급기준표(제8조제1항 관련)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 19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7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 도 운 입	선 박 운 입	항 공 운 입	자 동 차 운 입	현 지 교 통 비 (1일당)	숙 박 비 (1야당)	식 비 (1일당)	식 탁 료 (1야당)
의 장 · 부 의 장	1 등 급	2 등 정액	정 액	정 액	갑 지 5,000 을 지 4,500	갑 지 17,000 을 지 15,000	갑 지 11,000 을 지 9,500	800
의 원	2 등 급	2 등 정액	정 액	정 액	갑 지 4,500 을 지 4,000	갑 지 14,000 을 지 11,500	갑 지 10,500 을 지 9,000	800

- 비고 : 1. “갑지”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청소재지 및 기타 시지역으로, “을지”는 갑지역 외의 지역으로 한다.
2.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서울특별시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3.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허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4.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5.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등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운항만청장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①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3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마포구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8조 "삭제"

[별표 1] 국내 여비 지급 기준표 (제7조 제1항 관련)

[별표 1] 국내 여비 지급 기준표 (제7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식당료 (1야당)
의장· 부의장	1등급	2등 경제	경제	경제	특지 4,500	특지 16,000	특지 10,500	800
					감지 4,500	감지 15,000	감지 10,000	
					을지 4,000	을지 13,500	을지 9,000	
의원	2등급	2등 경제	경제	경제	특지 4,000	특지 13,500	특지 10,000	800
					감지 4,000	감지 11,500	감지 9,500	
					을지 3,500	을지 10,500	을지 8,500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식당료 (1야당)
의장· 부의장	1등급	2등 경제	경제	경제	감지 5,000	감지 17,000	감지 11,000	800
					을지 4,500	을지 15,000	을지 9,500	
					을지 4,500	을지 15,000	을지 9,500	
의원	2등급	2등 경제	경제	경제	감지 4,500	감지 14,000	감지 10,500	800
					을지 4,000	을지 11,500	을지 9,000	
					을지 4,000	을지 11,500	을지 9,000	

비 고 : 1. "특지"는 서울특별시·직할시·과천시·경주시·및 제주시로,
 "감지"는 도청소재지·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외경부시·
 안산시·구리시·원주시·강릉시·속초시·홍주시·이리시·군산시·
 목포시·여수시·나주시·구미시·포항시·영천시·마산시·울산시·
 전주시·서귀포시로, "을지"는 기타지역으로 한다.

비 고 : 1. "감지"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청소재지 및 기타 시지역으로,
 "을지"는 감지역 외의 지역으로 한다.
 2.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서울특별시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3.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경제는 교통부장관의 인·의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합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인요금을 지급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2.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경역은 교통부장관의 인·허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합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인요금을 지급한다.</p> <p>3.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 3등급은 무궁화호 보통실 또는 통일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최고등급에 그 노선의 열차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p>	<p>4.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p> <p>5. 수도권행시 패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등급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경역은 해운항만청장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p>										
<p>[별표 3]</p> <p style="text-align: center;">의회소재지내 출장사 여비지급기준표 (제8조 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여 행 거 리</th> <th style="text-align: center;">지 급 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2킬로미터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u>별표1의 현지교통비 금액</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2킬로미터 미만 8킬로미터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u>별표 1의 현지교통비의 5할</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8킬로미터 미만 2킬로미터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u>대중교통요금 실비금액</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킬로미터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u>지급하지 아니함</u></td> </tr> </tbody> </table> <p>비 고 :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버스 또는 지하철 요금을 기준으로 하며, 대중교통수단의 정기운행간격이 1시간이상인 지역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일반택시요금을 지급할 수 있다.</p>	여 행 거 리	지 급 액	12킬로미터 이상	<u>별표1의 현지교통비 금액</u>	12킬로미터 미만 8킬로미터 이상	<u>별표 1의 현지교통비의 5할</u>	8킬로미터 미만 2킬로미터 이상	<u>대중교통요금 실비금액</u>	2킬로미터 미만	<u>지급하지 아니함</u>	<p>[별표 3] 삭제</p>
여 행 거 리	지 급 액										
12킬로미터 이상	<u>별표1의 현지교통비 금액</u>										
12킬로미터 미만 8킬로미터 이상	<u>별표 1의 현지교통비의 5할</u>										
8킬로미터 미만 2킬로미터 이상	<u>대중교통요금 실비금액</u>										
2킬로미터 미만	<u>지급하지 아니함</u>										